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41238 판결 [보증채무금]

참 조 조 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재 판 경 과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41238 판결

청주지방법원 2005. 6. 23 선고 2004나4622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음성군법원 2004. 10. 28 선고 2004가소1182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AAAA조합

【피고, 상고인】 농업협BAB중앙회(소송대리인 변호사 홍CA)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05. 6. 23. 선고 2004나46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사건으로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과 같은 법령 위반 사유는 적법한 상고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897 판결,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등 참조).

또한,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定義的) 해석을 한 대법원판례의 판단을 말하고, ‘원심이 상반된 해석을 한다.’함은 그 법령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그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 견해를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다275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관리기관의 면책사유인 ‘금융기관이 관리기관의 보증을 받아 대출한 금액을 당해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한 다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총당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농림수산업자 등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다른 채권의 변제에 총당하는 경우는 물론, 대출금이 채무자에게 교부되거나 송금되어 채무자가 그 대출금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보증부대출금이 변제에 총당된 경우도 포함한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인바, 원심판결 또한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를 전제로 판단을 한 것임이 그 취지로 보아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판례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는 결국 원심판결의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이용우 박재윤 양승태(주심)